

용 도	띄어야할 거리(미터)	적용대상 건축 선	용 도	띄어야할 거리(미터)	적용대상 건축 선
교육연구시설 중 입시제학 원	3	(생략)	교육연구시설 중학원(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 표1의 문리계 열중입시학원 에 한함)	3	(현행과 같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의 안 번호	348
-----------	-----

제안일자 : 1994. 11. 4.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 사무국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사무국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의회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심도있는 1995년도 예산심의등을 위한 자료및 정보를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한다.(94.11.30~94.12.6)
-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 의회사무국으로 한다.
- 감사반 편성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10인)
-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운영위원회실로 한다.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19조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 사무국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사무국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의회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심도있는 1995년도 예산심의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

2. 감사기간

1994. 11. 30.(수) — 1994. 12. 6.(화)
[7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마포구의회 사무국

4. 감사위원회 편성및 감사장소

구분	감사위원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사 무 직 원
운 영 위 원 회	(위원장) 이봉형 (간 사) 홍성환 (위 원) 김상열, 김성환 심재창, 윤명규 이강필, 이인구 한현덕, 홍길표	의 회 사무국	운 영 위원회실	박진양

5. 감사일정

구분	일 정	내 용	비 고
준 비 기 간	'94.11.1	· 감사시기 및 기간 결 정	
	11.4	· 감사관계 자료 수합	
		· 감사계획서 수립, 채 택	
	11.9	· 서류제출, 증인 출석 요구서 이송	
11.24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감사 계획 통보 · 감사자료 검토, 문제 점 파악		
실 시 단 계	'94.11.30.	· 위원장의 감사 선언 · 사무국장 인사 및 간 부 소개 · 증인 선서 · 업무 보고 · 행정사무감사 실시	
	'94.12.6.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감처 사리 결단 과계	'94.12.7 ~12.21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12.22	·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12.29	· 감사 결과 보고(본 회 의) · 감사결과 시정 및 처 리요구사항 이송	

6. 감사 요령

감사는 의회 사무국의 1991. 4. 15 이후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보고 및 질문, 서류 제출 요구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

7. 행정 사항

가. 위원장은 감사관계 자료를 수합하고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

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의 안 번호	349
-----------	-----

제안일자 : 1994. 11. 7.
제안자 : 총무재무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 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심도있는 1995년도 예산심의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한다.(94. 11. 30~94. 12. 6)
-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청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 및 아현3동, 용강동, 합정동, 상암동사무소로 한다.
- 감사반 편성은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으로 한다.(9인)
-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실 및 해당동사무소로 한다.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제19조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 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심도있는 1995년도 예산심의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

2. 감사기간

1994. 11. 30.(수) — 1994. 12. 6.(화)
[7일간]

3. 감사 실시 대상기관

- 마포구청(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
- 동사무소(아현3동, 용강동, 합정동, 상암동)

4.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장소

구분	감사위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사무직원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김유현 (간사) 김문태 (위원) 김성환, 심재창, 유남렬, 조희태, 이봉형, 채운석, 황태식	총무국 재무국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동사무소	총무재무위원회실 및 해당동사무소	박진양

5. 감사 일정

구분	일정	내용	비고
준비기간	'94.11.1.	· 감사시기 및 기간 결정	
	11.7.	· 감사관계 자료 수합	
	11.9.	· 감사계획서 수립, 채택 · 서류제출, 증인 출석 요구서 이송	
	11.24.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감사자료 검토, 문제점 파악	
실시	'94.11.30 ~	· 위원장의 감사 선언 · 총무국(3실포함) 행정사무감사 실시 - 총무국장인사 및 간부소개 - 증인 선서 - 총무국(3실포함) 업무보고 - 감사실, 시민봉사실, 문화공보실 -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감사 -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 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 재무국장인사 및 간부소개 - 증인 선서 - 재무국 업무보고 -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 토지관리과 ·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94.12.6.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구분	일 정	내 용	비 고
감치	'94.12.7 ~12.21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사리	12.22	·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결단	12.29	· 감사결과 보고(본회의)	
과제		·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5. 감사 요령

감사는 마포구청의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의 각과와 재무국의 각과의 1991. 4. 15. 이후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보고 및 질문, 서류제출요구와 현지 확인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증인)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

6. 행정 사항

- 가. 위원장은 감사관계 자료를 수합하고 감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
- 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의안 번호	350
----------	-----

제안일자 : 1994. 11. 7.
제안자 : 시민보전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1995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골자

-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한다(1994. 11. 30~1994. 12. 6)
- 감사대상은 마포구청 시민국과 보전소 및 동사무소로 한다.
- 감사반 편성은 시민보전위원회 위원 전원(9명)으로 한다.
-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시민보전위원회 실 및 동사무소로 한다.

3.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제19조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1995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감사기간

1994. 11. 30(수) — 1994. 12. 6(화) [7일간]

감사실시대상기관

- 마포구청(시민국, 보건소)
- 동사무소(24개동)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장소

구분	감사위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사무직원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김동휘 감사홍길표 위원 김상열, 박주서, 송운석, 윤정용, 이종일, 정연우, 홍성환	시민국 보건소 동사무소	시민보건위원회실, 동사무소	조항현

감사일정

구분	일정	내용	비고
준비기간	'94.11.1.	· 감사시기 및 기간 결정	
	11.7.	· 감사관계 자료 수합	
		· 감사계획서 수립, 채택	
	11.9.	· 서류제출, 증인 출석 요구서 이송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11.24.	· 감사 계획 통보		
	· 감사자료 검토, 문제점 파악		
실시단계	'94.11.30.	· 위원장의 감사선언	
		· 시민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증인선서	
		- 시민국 업무보고	
		- 사회복지과 감사	

구분	일정	내용	비고
실시단계	'94.12.6.	- 가정복지과 감사	
		- 위생과 감사	
계	'94.12.6.	- 환경과 감사	
		- 청소과 감사	
실시	'94.12.6.	·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 소장 인사 및 간부소개	
단	'94.12.6.	- 증인선서	
		- 보건소 업무보고	
계	'94.12.6.	- 보건행정과 감사	
		- 보건지도과 감사	
실시	'94.12.6.	- 의약과 감사	
		·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단	'94.12.6.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계	'94.12.6.		
감치사리	'94.12.22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결단	12.29	· 감사결과 보고(본회의)	
		·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감사요령

감사는 시민국의 각과별, 보건소의 각과별, 동사무소별로 1991. 4. 15. 이후의 행정에 관하여 보고 및 질문, 서류제출요구와 현지확인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

행정사항

1. 위원장은 감사관계 자료를 수합하고, 감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
2.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

감사실시대상기관

- 마포구청(시민국, 보건소)
- 동사무소(24개동)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장소

구분	감사위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사무직원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김동휘 감사 홍길표 위원 김상열, 박주서, 송윤석, 윤정용, 이종일, 정연우, 홍성환	시민국 보건소 동사무소	시민보건위원회실, 동사무소	조항현

감사일정

구분	일정	내용	비고
준비기간	'94.11.1.	· 감사시기 및 기간 결정	
	11.7.	· 감사관계 자료 수합	
		· 감사계획서 수립, 채택	
	11.9.	· 서류제출, 증인 출석 요구서 이송	
11.24.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감사 계획 통보		
실시단계	'94.11.30.	· 감사자료 검토, 문제점 파악	
		· 위원장의 감사선언	
		· 시민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 국장 인사 및 간부 소개	
	- 증인선서		
	- 시민국 업무보고		
	- 사회복지과 감사		

구분	일정	내용	비고
실시단계	'94.12.6.	- 가정복지과 감사	
		- 위생과 감사	
		- 환경과 감사	
		- 청소과 감사	
		·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 소장 인사 및 간부 소개	
		- 증인선서	
		- 보건소 업무보고	
		- 보건행정과 감사	
		- 보건지도과 감사	
		- 의약과 감사	
		·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감치사리결단과계	'94.12.7. ~ 12.21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94.12.22	·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12.29	· 감사결과 보고(본회의)	
		·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감사요령

감사는 시민국의 각과별, 보건소의 각과별, 동사무소별로 1991. 4. 15. 이후의 행정에 관하여 보고 및 질문, 서류제출요구와 현지확인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

행정사항

1. 위원장은 감사관계 자료를 수합하고, 감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
2.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의안 번호	351
----------	-----

제안일자 : 1994. 11. 7.
제안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1995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골자

-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한다(94. 11. 30 ~ 94. 12. 6)
- 감사대상은 마포구청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및 동사무소로 한다.
- 감사반 편성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한다(11인)
-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실로 한다(필요시 현지확인)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제19조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1995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기간

1994. 11. 30(수) —— 1994. 12. 6.(화)[7일간]

3. 감사실시대상기관

- 마포구청(도시정비국, 건설국)
- 24개 동사무소

4.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장소

구분	감사위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사무직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열 간사 윤명규 위원 구우석, 권오범, 윤동현, 이강필, 이인구, 이종만, 이천규, 전병만, 한현덕	도시정비국 건설국 동사무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신승관

5. 감사일정

구분	일정	내용	비고
준비기간	'94.11.1	·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11.7	· 감사관계 자료 수합 · 감사계획서 수립, 채택	
	11.9	· 서류제출, 증인 출석 요구서 이송	
	11.24	· 감사계획 통보 · 감사자료 검토, 문제점 파악	